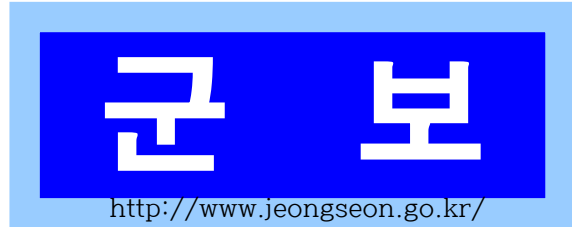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00호 2016. 10. 20. (목)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514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 조례 제2515호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정선군 조례 제2516호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6
- 정선군 조례 제2517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정선군 조례 제2518호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정선군 조례 제2519호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정선군 조례 제2520호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정선군 조례 제2521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 정선군 조례 제2522호 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8
- 정선군 조례 제2523호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43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73호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45
- 정선군 규칙 제1274호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59
- 정선군 규칙 제1275호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9

조 례

제232회 정선군의회(2016. 9.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14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리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을 “리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제2조제2항제5호(중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출타등”을 “출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무 인수, 인계서”를 “사무인계인수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전단 중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관할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무료열람 및 사용등”을 “무료열람 및 사용 등”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살예방 활동 수당 지급

제6조제8호(중전의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u>리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u>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12.29.>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u>각호</u>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12.29.> 1. ~ 3. (생략) <신설> 4. <u>기타</u>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 ①·② (생략)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u>출타</u>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29.>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u>사무 인수, 인계</u>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u>범위안</u>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u>범위안</u>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u>무료열람 및 사용</u>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u>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u>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7. <u>기타</u>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본조 신설 2006.12.29.>	제2조(이장의 업무) ① ----- 리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 ②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u> 5. <u>그 밖에</u> ----- 제3조(복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출타 등 -----. ④ ----- 사 무인계인수서 -----. 제4조(실비변상) ① ----- 범위 -----. ② ----- 범위 -----. 제5조(편의제공) -----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무료열람 및 사용 등 -----.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 1. ~ 6. (현행과 같음) 7. <u>자살예방 활동 수당</u> 8. <u>그 밖에</u> -----

개 정 이 유

- 자살사망률이 높은 강원도(전국 2위) 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이장들의 업무 중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 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업무를 추가하고,
- 이에 따른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장들의 자살 예방 역할 부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이장의 업무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 조문 추가(안 제2조제2항)
- 이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제232회 정선군의회(2016. 9.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15호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생략)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개 정 이 유

- 2016년 행정자치부의 적합성 검토를 거쳐 확정된 정비과제로 상위 법령에 위배 될 소지가 있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함.
(제7조제2항)

제232회 정선군의회(2016. 9.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16호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9조에 따라 정선군 지역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설치한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하 “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아동보호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센터로 한다.

제5조(이용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센터에 대하여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의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가정위탁·다문화소년소녀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군수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아동

제6조(비용보조)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 제 59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서 보조할 수 있다.

1. 운영비: 이용아동급식비, 시설비, 종사자의 인건비·처우개선비 및 교육비·훈련지원비

2.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3.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아동전용시설로서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괄호 안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없다.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센터의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평가 및 반영

5.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센터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장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한 차례 이상의 지도·감독을 하게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용보조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센터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개 정 이 유

- 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 중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방임아동, 조손가정 등을 이용 대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
-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7조)
-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함(안 제8조)
- 지원받은 센터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232회 정선군의회(2016. 9.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17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를 “적합하게 운영해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운영의 위탁)”을 “(관리운영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제1항에 따라”로, “군수가 설립한 공단이나 청소년단체”를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의한 청소년단체나 군수가 설립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하며,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가 제24조(위탁의 취소 등)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시설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제15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군수는 수탁자”를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수련시설”을 “청소년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청소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을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외부 청소년 관계전문”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범위 안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탁자 선정심의 및 재계약 수탁단체선정 심사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심사후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 심사 및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가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제19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수탁 단체와 협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탁법인의 의무사항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기부채납 사항
3. 사용료 및 프로그램 참가비 징수

제20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1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폐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사업비의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조직, 기구 및 정원, 예산 및 회계, 직원의 급여 및 수당, 사업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탁자에게”를 “청소년시설 수탁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자의 직무에 관하여”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을 “위법행위를 하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4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에 위탁한 경우
3.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
5.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결과, 종합평가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거나 안전점검에서 가장 최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6.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부·회피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제9호(중전의 제2호) 중 “위탁사무”를 “수탁자가 위탁사무”로, “인정될”을 “인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3호) 중 “위·수탁”을 “수탁자가 위·수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선군 청소년시설 명칭·기능·위치(제2조 관련)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5
신동읍 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 활동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다목적 공간 및 공연장 관리·운영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27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 활동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시설물 운영 및 관리	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12-6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 및 지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CYS-Net)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12-6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8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u>규정에 의거</u> 청소년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청소년기본법</u> 」 제18조제1항에 <u>따라</u> ----- -----
제4조(업무) 시설에서는 다음 <u>각호</u>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략) 6. <u>기타</u>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업무) ----- <u>각호</u> -----. 1.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u> -----
제5조(시설운영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또는 청소년 지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시설운영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u> ----- -----.
제6조(운영의 원칙) ① 관리자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u>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u> 하며 시설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조(운영의 원칙) ① ----- <u>적합하게 운영해야</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련시설의 사용)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 <u>7일전까지</u>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9조(수련시설의 사용) ----- ----- <u>7일 전</u> ----- -----.
제13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생략) 2. 사용일 <u>7일전</u> 취소: 전액반환 3. 사용일 <u>3일전</u> 취소: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u>7일 전</u> ----- 3. ----- <u>3일 전</u> -----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u>규정에 의거</u>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u>군수가 설립한 공단이나 청소년단체</u>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관리운영 및 위탁) ① --- 제5조제1항에 따라 --- ----- 「 <u>청소년활동진흥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의한 <u>청소년단체나 군수가 설립한 청소년육성재단</u>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가 제24조(위탁의 취소

② 군수는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미리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선정기준) 수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1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신 설>

③ (생 략)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심사한다.

1. · 2. (생 략)

등)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시설 수탁자가 될 수 없다.

③ 수탁자-----

④ 제3항에 따라 -----

⑤ 청소년시설-----

⑥ 청소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선정기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제1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외부 청소년 관계전문--.

③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

제18조(위원회 기능) -----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위탁시설 지도·감독사항 및 취소의 결정

<신 설>

제19조(위탁계약) ① (생 략)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제22조(운영규정) 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활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3조(지도감독) ①·② (생 략)

<신 설>

3. 그 밖에 -----

4. 수탁자 선정심의 및 재계약 수탁단체선정 심사

제19조(위탁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심사후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 심사 및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가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제19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수탁 단체와 협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탁법인의 의무사항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기부채납 사항

3. 사용료 및 프로그램 참가비 징수

제20조(비용의 보조) ----- 범위-----

제21조(수탁자의 의무) -----

1. ~ 6. (현행과 같음)

7.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폐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운영규정) ① ----- 범위-----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도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사업비의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생 략)

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생 략)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시설의 조직, 기구 및 정원, 예산 및 회계, 직원의 급여 및 수당, 사업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 청소년시설 수탁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자의 직무에 관하여 -- 위법행위를 하면 --. 다만, 제1호 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에 위탁한 경우

3.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

8. (현행 제1호와 같음)

9. 수탁자가 위탁사무----- 인정된 --

10. 수탁자가 위·수탁 -----

4.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부·회피하는 경우

5.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결과, 종합평가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거나 안전점검에서 가장 최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6.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 제1항에 따라 -----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시행규칙) ----- 필요-----
-----.

개 정 이 유

-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검토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고 늘어나는 시설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사용료의 반환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3조)
-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관리 하던 단체가 위탁이 취소될 경우 3년간 수탁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청소년 관계 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 수련시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군수는 사업비의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조직, 기구, 예산 등 사업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정선군 청소년 수련시설에 임계청소년 문화의집과 정선군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추가함(안 별표1)

제232회 정선군의회(2016. 9. 29.)에서 의결된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18호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를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정선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3조, 제6조, 제4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선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3항제2호 중 “자 3인이상”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강원도 지명위원회(이하 “도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문화예술담당”을 “공간정보담당”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회의 및 의사)”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의사”를 “회의”로,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2조(중전의 제6조)제2호 중 “관할구역내”를 “관할 구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구역내”를 “구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변천과정등”을 “변천과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명등”을 “지명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의견청취등)”을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견청취등”을 “의견청취 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작성, 비치하여야”를 “작성·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중 “의하여 심의한 날로”를 “따라 심의한 날”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자 3인이상</u>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u>도지명위원회</u>의 위촉 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정선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정선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사람 3. 그 밖에 ----- 사람 ④ ----- 강원도 지명위원회(이하 “도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 ⑤ ----- 1명----- 공간정보담당-----. <삭제>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 회의----- 회의를 시작-----.

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생 략)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생 략)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신 설>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등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등) (생 략)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

-----.

제4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2조(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관할 구역 내-----
--
3. 그 밖에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6조에 따른 -----
----- 구역 내-----
-----.

② 제1항에 따라 -----
----- 변천과정 등-----

-----.

③ ----- 지명 등-----

-----.

제8조(의견청취 등) -----

----- 의견청취 등 -----
-----.

제9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록) ----- 각 호-----
----- 작성·비치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

제11조(보고) -----

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따라 심의한 날-----
----- 보고해야 -----.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 정 이 유

○ 강원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명관리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 반영 및 근거법률 명칭변경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 제명 띄어쓰기
 -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 ⇒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 상위법령명 및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위촉직 위원 수의 구성 비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1항)
 -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위원회의 간사 변경(안 제3조제5항)
 - “문화예술담당” ⇒ “공간정보담당”
- 시행규칙을 운영세칙으로 변경(안 제12조)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관련 규정 변경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조항 배열순서 정비

제232회 정선군의회(2016. 9.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19호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를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로, “제출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제14조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으로, “때에는”을 “때에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를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으로, “협의회”를 “제8조에 따른 협의회”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 ----- <u>다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u> ----- ----- ----- ----- ----- <u>첨부하여 군수에게</u> <u>신청하여야</u> -----. -----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제3항에 따른 <u>권고 또는 조언</u> ----- 때에 제8조에 따른 -----.
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u>전통상업보존구역에</u>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u>협회의</u>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 ----- <u>경우 대</u> <u>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u> 있을 <u>때에는</u> ----- <u>제8조에 따른 협의회</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u>필요</u> ----- -----.

개 정 이 유

-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유통산업발전법과 조례 중복내용을 보완 함(안 제14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에 한해 조건 등 부과 규정을 마련 함(안 제15조제1항)

제232회 정선군의회(2016. 9.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20호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해마다 적립해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지정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를 “(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정선군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를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을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 나. 재난예방 대주민 교육, 홍보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마.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
-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복구 및 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재난 감시용 기상장비, 예·경보시스템 구축(신설을 포함한다) 및 유지보수
- 나. 가뭄재해지역 임시 용수확보(관정개발, 임시송수관로 설치, 기존 용수 시설의 보수·보강, 소형·간이 양수장 및 하천·저수지 취수용 간선 설치, 저수지 준설 등을 말한다)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수해·강풍 등 자연재해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나.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등 재난안전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
- 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제4군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중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에 따른 긴급한 예방·관리
-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가축감염병 중에서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에 따른 긴급한 예방·관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풍수해저감계획·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비 지원
- 나. 재난심리회복지원 전문가 양성·관리 및 심리상담 활동
9. 제1호부터 제8호 각 목에서 규정한 용도 외에, 법령의 범위에서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재난발생에 대한 긴급 상황대응 용도
- ② 제1항의 규정 외 항구복구 사업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로, “소요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4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금운용관 :”을

“기금운용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임기금운용관 :”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금출납원 :”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군수가”를 “부군수가 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정선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제2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연2회”를 “해마다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를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 (생략)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정선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선군금고에 전용계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u>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u>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 제2조(기금의 조성) ----- 각 호-----.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해마다 적립해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지정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정선군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 ②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 나. 재난예방 대주민 교육, 홍보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마.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복구 및 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재난 감시용 기상장비, 예·경보시스템 구축(신설을 포함한다) 및 유지보수
 나. 가뭄재해지역 임시 용수확보(관정개발, 임시송수관로 설치, 기존 용수 시설의 보수·보강, 소형·간이 양수장 및 하천·저수지 취수용 간선 설치, 저수지 준설 등을 말한다)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수해·강풍 등 자연재해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
 나.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등 재난안전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
 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제4군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중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에 따른 긴급한 예방·관리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가축감염병 중에서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에 따른 긴급한 예방·관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

용 용자 제7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②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임차비용의 용자규모는 각 세대별 대피 또는 퇴거에 소요되는 총 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하고, 각 세대별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의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생략)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u>기금운용관</u>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u>분임기금운용관</u> : 읍·면장 3. <u>기금출납원</u> : 재난업무 담당주사, 읍·면 총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략)	용 용자 7. <u>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u> 가. <u>풍수해저감계획·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u> 나. <u>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u> 다. <u>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u> 8. <u>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u> 가. <u>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비 지원</u> 나. <u>재난심리회복지원 전문가 양성·관리 및 심리상담 활동</u> 9. <u>제1호부터 제8호 각 목에서 규정한 용도 외에, 법령의 범위에서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재난발생에 대한 긴급 상황 대응 용도</u> ② <u>제1항의 규정 외 항구복구 사업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u> 제7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 필요한 -----. ② 영 제74조제6호에 따른 ----- -----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회계공무원) ① ----- ----- 각 호 -----. 1. <u>기금운용관</u>: ----- 2. <u>분임기금운용관</u>: ----- 3. <u>기금출납원</u>: ----- ---- ② ----- ----- 제4조제2항에 따라 ----- -----.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정선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재난 및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신설>

② -----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③ ----- 부군수가 되고-----.

④ ----- 군 -----

-----.

⑤ ----- 1명-----.

제10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에 따른 -----
-----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연도-----
----- 해마다 2회 -----
-.

③ -----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정선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 -----. ②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③ ----- 제1항에 따른 ----- ----- 회계연도마다 ----- -----. 제14조(시행규칙) ----- 필요 ----- -----.
---	---

개 정 이 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및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서 위임한 기금의 용도를 우리군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과, 용어, 문장 및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주 요 내 용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인용법령, 용어, 문장 및 띄어쓰기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
 - 장기예치기금액 ⇨ 의무예치금액
 - 당해연도사용기금액 ⇨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각 호로 규정된 재난관리기금 용도 범위를 군 실정에 맞도록 세부용도 규정(안 제6조)
 - 현재 4개 용도를 9개 분야 21개 세부용도로 규정
-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제4항)
-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제232회 정선군의회(2016. 9.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21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9조”를 “① 영 제7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2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일 것

나. 학교 설치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것

별표 5 제11호 “(1) ~ (4)” 를 “가 ~ 라” 로 하고, 제11호 3호 중 “차목 (1)부터 (6)까지의” 를 “제10호 가목부터 바목까지로의” 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표 12 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제10호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 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7 제8호 가목 내지 마목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19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제4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 ----- ----- -----. 1.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 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2조(건폐율 강화 및 완화) ① (생략)	제52조(건폐율 강화 및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신설> ③ ~ ⑥ (생략)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u>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u> <u>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일 것</u> <u>나. 학교 설치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u> ③ ~ ⑥ (현행과 같음)
--	--

개 정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안 제49조)
 - 비도시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규제를 완화
-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안 제52조제2항)
 -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퍼센트까지 건폐율 완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반영 (안 별표 9, 10, 12, 16, 19)

제232회 정선군의회(2016. 9.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22호

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축산농가용 친환경 발효제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한 가축의 질병 예방과 악취저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미생물”이란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을 말한다.
2. “발효제”란 친환경미생물과 대두박, 옥분, 고령토, 비타민제제 등을 혼합하여 발효시키는 축산농가용 친환경 보조사료를 말한다.
3. “축산농가”란 동물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에 종사하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에 따른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원활한 제5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이하 “생산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산센터는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32-22 일원에 둔다.

제5조(업무 및 조직) ① 생산센터는 발효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 및 생산·공급
2. 이용축산농가 교육
3. 해당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생산센터에는 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필요한 직원은 농

업기술센터소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명한다.

제2장 생산 · 신청 및 공급

제6조(생산수급계획) 군수는 발효제가 축산농가에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간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발효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축산 농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효제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에 따라 발효제의 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그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생산센터에서 생산된 발효제는 군에 거주하는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공급한다.

④ 군수는 축산농가에게 발효제를 공급할 경우에는 특성과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제8조(공급 및 가격결정) ① 발효제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판매 수익금은 다음 날 오전까지 세입조치 해야 한다.

② 공급가격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해마다 3월에 군수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축산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효제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생산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대장비치) 생산센터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발효제 공급 신청서, 발효제 생산대장과 발효제 신청 및 공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해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설치) 군수는 생산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축산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장으로 한다.

1. 단체의 장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물지도담당이 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발효제의 공급가격 조정 및 결정

2. 그 밖에 위원장이 생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 미생물 발효제 공급신청서

- 주 소: 군 읍·면 로(길) 번지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휴대전화:)
○ 축 종:
○ 사육두수:
○ 공 급 량:
 ※ 두당 사료급여량 1% 내외
○ 공 급 일:

「정선군 친환경 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7조에 따라 발효제를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 미생물 발효제 생산대장

(군종 :)

번 호	월 일	생 산 량	확 인 자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 미생물 발효제 신청 및 공급대장

번호	신청인		신 청		공 급		비고
	주소	성명	월일	신청량	월일	공급량	

개 정 이 유

- 본 조례는 정선군 축산농가용 친환경 발효제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공급을 통한 가축의 질병예방과 악취저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업무 및 조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발효제는 정선군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공급함을 규정(안 제7조)
 ○ 공급 및 가격결정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 제17조)

제232회 정선군의회(2016. 9. 29.)에서 의결된 정선군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23호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불입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불입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정선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음식판매자동차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안 제2조)

규 칙

2016년도 제8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20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규칙 제1273호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제출서류) ①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아리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정선군수(이하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대장에 등재 후 사용료 납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사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부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사용 취소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 하여야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선군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는 행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반입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매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검인대장에 등재 후 검인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리랑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공연(행사)명칭							
신청인	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이동전화		
	주소						
사용목적		☐ 클래식음악 ☐ 연극·무용 ☐ 뮤지컬·오페라·발레 ☐ 행사·대중음악 ☐ 녹음 ☐ 촬영 ☐ 전시 ☐ 기타()					
사용시설	기본시설	☐ 공연장(____시간) ☐ 연극연습실(____시간) ☐ 음악연습실(____시간)					
	부대시설	☐ 피아노(____회) ☐ 난방(공연장, 음악·무용연습실 ____시간) ☐ 냉방(공연장, 음악·무용연습실 ____시간) ☐ 무대조명(____시간) ☐ 드라이아이스(____회) ☐ 스모그(____회) ☐ 유·무선마이크(____회) ☐ 녹화/녹음(____회) ☐ 인력지원(____명) ☐ 그밖의 부대시설()					
대관자가 특별히 설치하는 설비내역							
사용시간	준비기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간 ()시간	공연횟수 ()
	공연기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간 ()시간	
	철수기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간 ()시간	
첨부 : 1. 공연 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이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리랑센터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공연(전시·행사) 명칭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주소 (단체 또는 대표자)		연락처	이동전화	
				전화번호	
공연·행사의 내용					
변경사항	구분	당 초		변 경	
	사용일시				
	시설사용				
	부대시설				
	기 타				
변경 사유 (상세히 기재)					
「정선군 아리랑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 용 허 가 서

제 호

신청인	주 소			
	성 명			
사 용 시 설			사 용 인 원	명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일 시간)		
사 용 목 적				
비 고		뒷면 허가조건을 붙여 허가함		

「정선군 아리랑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리랑센터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

허 가 조 건

1.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사용기간 중 아리랑센터(이하 “센터” 이라 한다)의 시설, 장비, 비품을 파손 및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 · 정돈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센터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센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센터 주변의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하여 센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정선군수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8. 사용료는 납부기한까지 정선군수가 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9. 상기 허가조건 위반 또는 조례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센터에서는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사용허가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등의 조문 해석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정선군수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사 용 변 경 허 가 서

1. 신청자 주소 :

2. 성명(단체명) :

3. 변경허가 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아리랑센터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인)

[별지 제6호서식]

사용최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illegible]

[별지 제7호서식]

아리랑센터 사용료 감면신청서

공연(행사)명칭					
신청자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체 또는 대표자)			연락처	
공연·행사의 내용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		출연 및 참석예정 인원수	
감면신청사유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설비 및 물품 반입 반출 허가신청서

1. 반 입 : 20 년 월 일
2. 반 출 : 20 년 월 일
3. 반입 및 반출 설비·물품 목록

연 번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 및 물품의 반입·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장비의 반입·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인)

[별지 제9호서식]

관 랑 권 검 인 신 청 서

- 단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 행사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관람권 검인내역

구 분 관람권	검 인 요 청		비 고
	수 량	금 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검 인 대 장

일련 번호	검인 년월일	검 인 내 역				검인자 성 명	확인자 성 명	비고
		신청자	공연명	관람권의 종류	매수			

개 정 이 유

-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예정 15일 전까지 제출(안 제2조)
-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은 5일 이내 처리(안 제3조)
-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입·반출에 대한 절차를 규정(안 제5조)
- 사용자 관람권 검인은 매표 7일 전까지 제출(안 제6조)

2016년도 제8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74호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의 자료수집)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거나 기증 또는 기탁(이하 “기증 등”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유물 매도·기증 등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기증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③ 제1항에 따라 유물의 기증 등을 한 사람에게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증서를 교부한다.

④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탁자의 반환 요구 시까지로 한다.

⑤ 기증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기증 자료 원부에, 기탁 자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기탁 자료 원부에 기록·관리 한다.

제3조(유물의 감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증(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물을 구입할 경우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을 감정하여야 하며, 유물감정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수장품의 관리) ① 군수는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수장품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장품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수장품 카드: 별지 제9호서식

② 군수는 수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여, 구입,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 은 박물관 수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 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수장고의 관리)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유물출납원과 같이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
2. 흡연·음주 등의 행위
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6조(대여)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여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대관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박물관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13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변경)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관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대관허가서: 별지 제14호서식
2. 대관허가불가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3. 대관허가취소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④ 군수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접수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유물의 반환)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탁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탁관리를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장품의 이용신청)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장품을 열람·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유물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장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유물관리관: 관장
2. 유물출납원: 학예연구담당 또는 관장이 지명하는 직원

② 유물관리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장품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수장품의 증·감에 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수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수장품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 ③ 유물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정선군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11조(유물출납) ① 유물출납은 유물관리관 책임으로 행한다.

- ② 유물출납원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유물출납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유물 반·출입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다만, 내부적인 유물 이동시에는 유물이동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유물출납원 부재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연중 수시로 모집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시안내 자원봉사자: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해설과 안내
2. 체험학습실 자원봉사자: 체험학습실 이용자 안내

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내역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물 매도·기증 등 신청서						구 분	
						매도□/기증□/기탁□	
접수번호 :							
인적사항	성 명 (상 호)		연 락 처		자택(사무실) : 휴대 전화 :		
	주 소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청 유물목록							
연번	유물명칭	시 대	크 기	구조특징	출 처	요구액 (구입시 기재)	기탁기간 (기탁시 기재)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매도·기증·기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매도자 또는 기증·기탁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명칭		수량	
크기		시대	
소장자		요구액	금 원(W)
소장경위			
내용			

사진
(8.89 × 12.7cm)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물(기증·기탁) 증서

주 소

기관·단체명

성 명(대표자)

귀하(단체·기관)께서 아리랑박물관에 소중한 유물을 (기증·기탁)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기증·기탁)하신 ○○ 등 ○○점의 유물은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자료로 보존하여 문화예술발전과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유물목록 별첨)

[별지 제4호서식]

기증 자료 원부

[illegible]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보 관 증

연번 :

신청자 인적 사항	성 명 (상 호)		전화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 소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유물명칭					
신 청 서 접수번호		보관일시			

1.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정선군수가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추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유물감정결과 보고서

□ 유물의 수집방법 : 구입 (), 기증 (), 위탁관리 (), 관리전환 ()

(감정평가대상번호)

유물명칭		관계인물		시 대	
규 격		수 량		재 질	
희 망 매매가	금	원	보존상태	상.중.하	특 징
평가사항	진위여부	가 . 부	소장가치	상 . 중 . 하	
	구입여부	가 . 부	평가금액	금	원
감정의견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사 (인) 감정사 (인)
 감정사 (인) 감정사 (인)

정선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수장품 관리대장

년 월 일 현재

유물구분	기존 수량					증 감					현재 수량					비고
	기 증	기 탁	구 입	대 여	기 타	기 증	기 탁	구 입	대 여	기 타	기 증	기 탁	구 입	대 여	기 타	
합계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수장품 카드

유물번호		분류번호		소장구분		현존여부	
명 칭	(한 자)			수 량			
	(영문)						
국적/시대				작자/제작처			
재 질				장 르			
용도/기능							
크 기							
문양/장식				무게			
명 문	구 분 :			내 용 :			
발굴 일자			출토지				
보존 처리							
유물 상태		전시순위		입수일자		입수연유	
입 수 처							
가 격		보험		문화재지정		지정일자	/ /
특 징							
참고자료							
비 고							
원시자료	원 판 :						
등록일자		자료기록자			자료입력자		
사 진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수장고 출입대장

[illegible]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유물 대여 신청서

대 여 작 품	유물번호	유물명	제작년도	규격	비고
대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대 여 사 유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아리랑박물관 유물 대여신청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작품 대여신청 및 결과 통보 등 업무처리에 활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신청자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 후 5년간 보관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업무처리 불가 ※ 위 항목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업무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인)					
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아리랑박물관장이 부하는 조건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여받는자 기 관 명 성 명 연 락 처 (인)					
정선군수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대관허가신청서

담당자	담 당	관 장	결
			재

신 청 인	단 체 명			대표자성명			
	주 소						
	성 명 (신 청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동전화		
		FAX			e-mail		
대 관 신 청 사 항	행 사 명						
	장 소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세부일정	준비 및 연습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본 행사(공연)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정리 및 철수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부대설비	☐ 냉.난방 ☐ 음향 ☐ 빔프로젝터 ☐ 조명 ☐ 기타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시간)					
참석관객	명		출연인원	명			
행 사 주요내용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대관허가변경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전 화	사무실	
				자 택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목적 (행사명 등)					
변경사유					
변 경 내 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사용시설				
	부속설비				
	기 타				
비 고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대관허가서

사 용 자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주 소				
	성 명 (신 청 인)				
사 용 허 가 사 항	행 사 명				
	장 소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시간)			
	사 용 료				
	허가조건	이 면 참 조	납부기한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인

준 수 사 항

1.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박물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본 박물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 내·외의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하여 본 박물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7. 조례 제20조제2항제3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8. 대관료는 납부기한까지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됩니다.
9.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10. 사용 시 문구해석상 의견 차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대관허가불가통지서

단 체 명			
주 소			
성 명			
신청내용	사용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시간)	
불 허 가 사 유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주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대관허가취소신청서

행 사 명				
허가시간				
허가내용				
허가취소 사 유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행사를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정선군수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대관허가 신청접수대장

[illegible]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유물반환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자택(사무실) : 휴대 전화 :

반환사유	
------	--

반 환 유 물 목 록

연 번	유물명칭	시 대	수 량	크 기	비고

위 유물을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유물이용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속·단체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이동전화		
		FAX			e-mail	@	
이용 유물 내역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시대	구조·특징	출처	
이용일시	년 월 일		이용구분	☐ 열람 ☐ 복제 ☐ 사진원판사용 ☐ 사진촬영			
이용목적	☐ 학술논문 ☐ 학위논문 ☐ 연구자료 ☐ 기타()						
이용인원	본인 외 ()명		연번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용료	유				무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유물출납대장

담당자	유물출납원	유물관리관	결 재

일 시	출 납 일	년 월 일	격 납 일	년 월 일	비 고
목 적	자 료 정 리		유물의 이용		
	보 존 처 리		대 여		
	전 시		기 타 사 유		

[illegible]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유물 반(출)입 신청서

제 호

신고자	직위(직급)		성 명	
	소 속			
반(출)입유물	유 물 명		번 호	
	목 적		수 량	

위와 같이「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입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출)입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 (절 취 선) -----

유물 반(출)입 허가서

제 호

신고자	직위(직급)		성 명	
	소 속			
반(출)입유물	유 물 명		번 호	
	목 적		수 량	

위와 같이「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주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자원봉사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E-mail				
활동경력	기관명		봉사기간	봉사내용	비고
활 동 희망분야					
활 동 가능요일	정 기 적	평 일		주 말	
	비정기적				
기타사항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봉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자원봉사자 활동내역 기록부

[illegible]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개 정 이 유

-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치 않을 때 유물 매도·기증신청을 접수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2조)
-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을 심의(안 제3조)
-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수장품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안 제4조)
-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유물출납원과 같이 출입(안 제5조)
- 박물관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 30일 전까지 신청(안 제7조)

2016년도 제7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20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규칙 제1275호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으로, “평균년액”을 “평균연액”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예치기금”을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본문 중 “거치기간중”을 “거치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상환기간내”를 “상환기간 내”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금고의”를 “수탁기관이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상환기간전이라”를 “상환기간 전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기한내”를 “기한 내”로, “인정 될”을 “인정될”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효율적인” 을 “효율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 을 “제1항” 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 법정적립액은 정선군의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u>평균년액</u>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정선군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 시작 이전 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u>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예치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u>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u>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 및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예탁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u> 제5조(융자의 조건 등) <u>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u> 1. 융자기간은 2년 내지 3년거치 3년 내지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 3내지 5퍼센트의 변동금리로 하되, <u>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u>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u>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u> 아니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u>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금고의 연체이율</u>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u>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u> 제1조(목적) -----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 필요-----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 ----- ----- <u>평균년액</u>-----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무예치금액----- -----. <삭 제> 제5조(융자의 조건 등) ---- <u>제7조제2항에 따른</u> ---- ----- <u>각 호</u>----- -----. 1. ----- ----- <u>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u>----- -----. 2. ----- ----- <u>거치기간 중</u>----- . ----- ----- <u>상환기간 내</u>----- ----- ----- <u>수탁기관이 정하는</u> ----- -----. 3.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생 략)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u>상환기간전이라도</u>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u>30일 이내</u>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u>기한내</u>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u>30일 전</u>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선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금고에 융자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u>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u>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u>상환기간 전이라</u>----- -----.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 ----- <u>30일 이내</u>-----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 그 밖의 ----- <u>기한 내</u> ----- 인정되는 ----- -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 ----- ----- <u>30일 전</u>-----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 <u>효율적</u> ----- ----- -----. ② 제1항----- ----- -----. 제9조(장부의 비치) ----- ----- <u>각 호</u>----- -----. 1. ~ 5. (현행과 같음)
---	--

개 정 이 유

-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와 시행규칙 에서 중복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
- 주택임차 비용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율의 명확한 근거를 규정.

주 요 내 용

- 재난관리기금 사용액의 잔액 및 기금발생 이자 관리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문 삭제(안 제4조제2항)
- 법 제40조(대피명령)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임차비용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율을 수탁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로 정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2항)
- 기타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기관 여신규정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5조제3항)